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2월 10일, 임미애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2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사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2.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4회 국회(임사회)

제2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6.4.29.) 상정, 축조심사, 의결
(수정가결)

제435회 국회(임사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5.1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임미애 의원)

연안은 바다와 호수, 하천 등과 접해 있는 육지 부분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8%가 거주하고 있고 국가 기반시설과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해수면 상승이나 태풍으로부터 배후지를 보호하는 등 사회적·경제적·환경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

그런데 과도한 연안개발로 인하여 연안 경관이 훼손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연안 침수 및 침식 위험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연안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현재 연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연안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연안침식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여러 가지 평가사항 중 일부로서 연안침식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안에서의 도로 공사 등에 대하여 협의 또는 승인·허가·인가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이 연안의 침수 및 침식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연안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연안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8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선영)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에 대해 승인·허가·인가 등을 하는 경우 연안침수·침식 사전 검토를 하도록 하고, 필요시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연안침식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복구비용을 절감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에 따르면 연안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연안개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공사 등의 개발사업이 ‘연안개발’과 관련된 경우에는 현재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른 해양이용협의·해양이용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각각의 평가항목 중 일부는 연안침수·침식에 대한 검토가 수행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연안침수·침식 검토 기준의 평가항목이 중복되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연안침수·침식사전검토 대상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위임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안개발사업에 대하여 협의·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개발행위가 연안의 침수·침식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되 필요시 전문기관·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사전검토 절차가 추가되면 예산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 사업자에게는 해당 절차가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이 적용되는 연안지역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해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조경태)

연안침수·침식사전검토의 주체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수정하는 등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수정안의 요지

연안침수·침식사전검토의 주체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수정하되 다른 법령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검토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현행법이 연안침식의 정의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안침수의 정의도 명시하며, 연안침수·침식사전검토가 적용되는 연안

지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제도의 취지 및 의미를 고려하여 약칭을 수정하며, 관계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안 제34조의8제1항제2호(「사방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방사업)을 삭제함(안 제34조의8).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부대의견

없음

10. 소수의견 요지

없음

11.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붙임] 1.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5.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법」,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른 현행 제도를 고려할 때 새로운 검토 절차가 추가되는 것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안침수·침식사전검토의 주체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수정하되 다른 법령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검토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현행법이 연안침식의 정의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안침수의 정의도 명시하며, 연안침수·침식사전검토가 적용되는 연안지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제도의 취지 및 의미를 고려하여 약칭을 수정하며, 관계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안 제34조의8제1항 제2호(「사방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방사업)을 삭제함(안 제34조의8).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4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해양수산부장관은 침수(연안의 토지, 시설물 등이 해수면의 상승, 파랑, 해일, 조수 등으로 인하여 바닷물에 잠기는 현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침식에 취약한”으로, “연안”을 “연안 및 그 인접지역”으로, “협의”를 “다른 법령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거나 협의”로, “침식검토”를 “침식사전검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8호) 중 “침식 등”을 “침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침식검토”를 각각 “침식사전검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침식검토”를 각각 “침식사전검토”로 한다.

안 부칙 중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u><신설></u>	<u>제34조의8(연안침수·침식사전검토) ①</u> <u>관계 중앙행정기관</u> <u>의 장 및 지방자치</u> <u>단체의 장은 대통</u> <u>령령으로 정하는</u> <u>연안에서 다음 각</u> <u>호의 어느 하나에</u> <u>해당하는 공사 또</u> <u>는 사업에 대하여</u> <u>협의 또는 승인·</u> <u>허가·인가 등을</u> <u>하려는 경우 해당</u> <u>공사 또는 사업이</u> <u>연안의 침수 및 침</u> <u>식에 미치는 영향</u> <u>을 사전에 검토(이</u> <u>하 “연안침수·침</u> <u>식검토”라 한다)하</u> <u>여야 한다.</u>	<u>제34조의8(연안침수·</u> <u>침식사전검토) ①</u> <u>해양수산부장관은</u> <u>침수(연안의 토지,</u> <u>시설물 등이 해수</u> <u>면의 상승, 파랑,</u> <u>해일, 조수 등으로</u> <u>인하여 바닷물에</u> <u>잠기는 현상을 말</u> <u>한다. 이하 이 조</u> <u>에서 같다) 또는</u> <u>침식에 취약한----</u> <u>-----</u> <u>연안 및 그 인접지</u> <u>역-----</u> <u>-----</u> <u>-----</u> <u>-----다</u> <u>른 법령에 따른 협</u> <u>의 요청이 있거나</u> <u>협의-----</u> <u>-----</u> <u>-----</u>

		----- ----- ----- -----
		----- <u>참식사전</u> <u>검토</u> ----- -----.
1. 「도로법」 제2 조제7호에 따른 도로공사		1. (개정안과 같음)
2. 「사방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 른 사방사업	<삭 제>	
3. 「소하천정비 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소하천 등 정비사업	2. ~ 6. (개정안 제 3호부터 제7호까 지와 같음)	
4. 「어촌·어항 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어항개 발사업		
5.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철 도시설의 건설사 업		

6. 「하천법」 제2

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7. 「항만법」 제2

조제7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8. 그 밖에 연안의

침수 또는 침식

등에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효율적이고 전문적

인 연안침수·침식

검토를 위하여 인

력, 시설·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요건을 갖춘 전

문기관 또는 단체

에 연안침수 · 침식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7. -----

-----침식-----

② 해양수산부장관

----- 침

식사전검토-----

침식사전검토----

_____.

	③ <u>제1항에 따른</u> <u>연안침수·침식검</u> <u>토의 대상이 되는</u> <u>공사 또는 사업의</u> <u>구체적인 종류·범</u> <u>위, 연안침수·침식</u> <u>검토의 기준·방법</u> <u>및 결과보고서의</u> <u>제출 시기·절차와</u> <u>제2항에 따른 연안</u> <u>침수·침식검토기</u> <u>관 지정 등에 필요</u> <u>한 사항은 대통령</u> <u>령으로 정한다.</u> 부칙 <u>이 법은 공포 후 6</u> <u>개월이 경과한 날부</u> <u>터 시행한다.</u>	③ ----- -----<u>침식사전</u> <u>검토</u>----- ----- ----- -----<u>침</u> <u>식사전검토</u>----- ----- ----- ----- -----<u>침식사</u> <u>전검토</u>----- ----- -----. 부칙 -----<u>1</u> <u>년</u>----- -----.
--	--	---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에 제34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8(연안침수·침식사전검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침수(연안의 토지, 시설물 등이 해수면의 상승, 파랑, 해일, 조수 등으로 인하여 바닷물에 잠기는 현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침식에 취약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안 및 그 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거나 협의 또는 승인·허가·인가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이 연안의 침수 및 침식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이하 “연안침수·침식사전검토”라 한다)하여야 한다.

1. 「도로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로공사
2.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사업
3. 「어촌·어항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의 건설사업
5.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6. 「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7. 그 밖에 연안의 침수 또는 침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연안침수·침식사전검토를 위하여 인력, 시설·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연안침수·침식사전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연안침수·침식사전검토의 대상이 되는 공사 또는 사업의 구체적인 종류·범위, 연안침수·침식사전검토의 기준·방법과 제2항에 따른 연안침수·침식사전검토의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4조의8(연안침수·침식사전검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침수(연안의 토지, 시설물 등이 해수면의 상승, 파랑, 해일, 조수 등으로 인하여 바닷물에 잠기는 현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침식에 취약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안 및 그 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거나 협의 또는 승인·허가·인가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이 연안의 침수 및 침식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이하 “연안침수·침식사전검토”라 한다)하여야 한다.</u> <u>1. 「도로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로공사</u> <u>2.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사업</u>

3. 「어촌·어항법」 제2조제6
호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
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의
건설사업

5.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
른 하천공사

6. 「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
른 항만개발사업

7. 그 밖에 연안의 침수 또는
침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이
고 전문적인 연안침수·침식사
전검토를 위하여 인력, 시설·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단
체에 연안침수·침식사전검토
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안침수·침
식사전검토의 대상이 되는 공
사 또는 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연안침수·침식사전검
토의 기준·방법과 제2항에 따
른 연안침수·침식사전검토의

	<u>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